

#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홍재현(Jae-Hyun H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 II. 현행 저작권법상 관련규정 및 운영현황        | 2. 보상금제도의 사전 인식 및 이해 정도            |
| 1. 현행법상 관련규정                    | 3.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
|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운영현황    | 4. 저자집단의 신분 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
| III. 연구 설계                      | 5. 사서집단의 신분 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
| 1. 측정도구                         | 6. 기타                              |
| 2. 연구 대상                        | V. 결론 및 제언                         |
| 3. 분석 방법                        |                                    |
| IV.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분석 |                                    |

### 초 록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고, 2004년 7월부터 도서관에서 실시되어 7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을 저자집단과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자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사서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저작권, 도서관, 보상금제도, 저작물 복제, 저작물 전송, 효용성 평가

### ABSTRACT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has been introduced in 2003. It has passed more than 7 years since this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July 2004.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ituation of operation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The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was conducted to a group of authors and librarians. First, the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between a group of authors and librarians was analyzed.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status variable of author group was analyzed. Also the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status variable of librarian group was analyzed. Finally,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presented the way to improve the problems.

Keywords: Copyright, Library, Compensation System, Reproducing Works,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Effectiveness Evaluation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hong@joongbu.ac.kr)

• 접수일: 2011년 8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7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 I. 서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는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에 도입되었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도입 취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인 공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간의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전송과 출력 서비스 기능을 허용하여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도서관간의 전송과 출력서비스 제공에 따른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되는 많은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 저작물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구축된 디지털 저작물을 도서관 상호 간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상호 간의 권리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후 현재 7년이 훌쩍 경과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활성화 즉, 원문DB 구축 및 전송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저작자에게 제대로 전달됨으로써 정착 단계에 들어섰어야 한다.

그런데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에 대한 보상금제도 실시 초기에 도서관의 뜨거웠던 논란<sup>2)</sup>에 비해서, 현재 이 제도에 대한 논쟁은 도서관에서 식은 것 같고 그 의미 또한 많이 퇴색되어 보인다. 7년째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도서관이 보상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지, 원문DB의 구축이 확산되었다는지, 이용자들의 보상금 적용 대상의 원문DB 이용이 활발해졌거나 활발해지고 있다는 등의 소리가 주변에서 크게 들리지 않고 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문저작물의 사용료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도서관 사서들은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보상금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미분배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상금제도가 저작권자, 이용자 및 도서관 사서 등으로부터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

1) 홍재현a,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 3), p.110. ; 홍재현b, 도서관과 저작권법 제2판(서울 : 조은글터, 2011), pp.388-389.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에 대한 보상금제도의 도입 초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고, 그 거부감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공도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2000. 8. 3)」로 표출되었다.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http://www.kpula.or.kr/index.php>> [인용 2011. 8. 1].

용성을 실제로 평가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다만,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보상금 운영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시도되어 있을 뿐이다.<sup>3)</sup> 따라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유에 따라 도입된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보상금 징수 및 분배의 합리성,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이 제도의 전반적인 효용성을 평가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검토하고 약정 체결 현황 및 보상금 납부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도서관 복제·전송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지,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원문DB 구축 및 원문DB 이용의 활성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상금액은 적절한지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실증연구는 앞에서의 언급한 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II. 현행 저작권법상 관련규정 및 운영현황

### 1. 현행법상 관련규정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이고, 동조 제6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5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동조 제7항은 권리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3) 宋在鶴, 圖書館에서 著作物 利用과 著作權에 관한 研究 : 圖書館補償金 制度를 中心으로(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2007). ; 임경훈,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2005). ; 홍재현 등, 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연구보고 KR 2004-14. ; 김포옥, 이진숙, “도서관 저작권보상에 대한 집단인식 비교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2004. 9), pp.29-50. 본 연구에서는 저자, 사서 및 이용자의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저작권법과 저작권 보상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지만, 보상금제도의 효용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 분석이 시도되지는 않았음. ; 조정권, “도서관 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41권, 제8호(2004. 8), pp.44-50. ; 우양태,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저작권법 세미나자료집, 2004), pp.43-6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표 1〉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현행법 관련 규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제1항 본문 및 제1항 제1호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제3항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5항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6항	제25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항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항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는 이 조문에 따른 보상금 면책 대상의 규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저작물 복제·전송이용의 보상금 면책 및 이용허락 대상 법적 규율 내용

이용 행위	형태	보상금 면책 및 이용허락 대상 여부	근거 규정	권리보호 조치여부	비고
조사·연구목적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출력)	디지털 ➡ 아날로그 복제(출력)	보상금 면책대상*	제31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본문, 동조 제5항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
	디지털 ➡ 디지털 복제	이용허락 대상	제31조 제1항 본문 단서		사용료 지급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	아날로그 ➡ (다른 도서관 등으로) 디지털 복제·전송	보상금 면책대상*	제31조 제3항, 동조 제5항	○ (제31조 제7항)	판매용 도서 등은 발행 후 5년 경과
	(판매용 발행 후 5년 미만) 아날로그 ➡ (다른 도서관 등으로) 디지털 복제·전송	이용허락 대상	제31조 제3항		사용료 지급
	(판매용) 디지털 ➡ (다른 도서관 등으로) 디지털 복제·전송	이용허락 대상	제31조 제3항, 동조 제4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저작재산권자인 비판매 도서 등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도서관 등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인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공탁은 제외되었음)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sup>4)</sup>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은 2004년 7월 이후 1년 단위로 매년 관보에 고시되어 오고 있다. 20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은 2011년 2월 14일자로 『관보』 제17445호에 수록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6호】<sup>5)</sup>로 고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그 적용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에 대한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구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력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1파일 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 당 20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1파일 당 0원

4) 이영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2003. 12), p.20.

5) 20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관보』 <<http://gwanbo.korea.go.kr>> [인용 2011. 8].

보상금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출력이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이란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면은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하고,” 파일이란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sup>6)</sup>

또한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단행본은 정기간행물이 아닌 모든 어문저작물을 말하며, 학위논문, 단행본, 정부간행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정기간행물은 주간, 월간, 계간 등의 정기간행물을 말하며, 매년 발간되는 백서, 연감 등은 정기간행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sup>7)</sup>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상권리자 단체로 지정된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각각의 도서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고, 이를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동 협회에서는 징수된 분배금을 『도서관보상금분배규정』의 제7조에 근거하여 분배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sup>

-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권리자의 분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분배기 보상금에 가산하여 분배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협회는 보상금 분배 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분배하고, 분배차익금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이관한다.
- ④ 협회는 보상금을 분배할 때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상세내역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2008. 10. 7 개정).

한편 초창기에 이 제도를 지칭하던 ‘도서관보상금’이라는 명칭은 『관보』에서 2010년부터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보상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9)</sup>

6) *Ibid.*

7) 이영아. *op. cit.*, p.21.

8) 한국복사전송권협회, <<http://www.copycle.or.kr>> [인용 2011. 8].

9) 홍재현b, *op. cit.*, p.395.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운영현황<sup>10)</sup>

가. 보상금 약정

다음의 <표 4>는 보상금제도가 실시되어 5년 이상이 경과한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12월 31일 기준 도서관 보상금 약정체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2009년·2010년도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약정체결 현황

(2009·2010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비고
	체결 대상 도서관 수	체결 도서관 수	체결 대상 도서관 수	체결 도서관 수	
공공도서관	645	284(44.0%)	704	314(44.6%)	국립중앙도서관 포함
대학도서관	630	196(31.1%)	650	227(34.9%)	
전문도서관	590	364(61.7%)	585	397(67.9%)	국회도서관 포함
계	1,865	844(45.3%)	1,940	938(48.4%)	

\* 괄호 안의 숫자는 체결 대상 도서관 중 체결 도서관의 비율이고, 대학도서관수에는 분관이 포함.

<표 4>에서 보면, 2009년 말 기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 약정을 체결한 도서관은 전체 대상 도서관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3%로 나타났다. 새로 약정을 체결한 총 도서관수는 112개관으로 전체 약정 체결기관 중 13.27%의 비율로 거의 비슷한 연도별 증가율에 그쳤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약정을 체결한 도서관 총수는 전체 대상 도서관의 48.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보상금 납부현황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12월 31일 기준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도 보상금의 납부금액을 살펴보면, 총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인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납부되었다. 약정 체결도서관 중 70개관(공공도서관 26개관, 대학도서관 5개관, 전문도서관 39개관)은 보상금 징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도 보상금 납부 총액은 28,556,491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10.4%나 감소율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감소추세가 관종별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문DB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에서 그 감소액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 하겠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약정 체결 도서관들은 연평균 만 원에서 2만

10) 홍재현b, 도서관과 저작권법, 제2판(서울 : 조은글터, 2011), pp.396-398에 수록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원 정도의 소액의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2009년·2010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납부현황

(2009·2010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감소액
	도서관 수	징수된 보상 금액	평균 납부액	도서관 수	징수된 보상 금액	평균 납부액	
국립중앙도서관	1	2,714,979원		1	2,690,197원		-24,782원
국회도서관	1	13,079,515원		1	11,543,780원		-1,535,735원
공공도서관	257	3,088,397원	12,017원	313	2,428,212원	7,758원	-660,185원
대학도서관	191	7,622,071원	39,906원	227	6,966,917원	30,691원	-655,154원
전문도서관	324	5,353,011원	16,522원	396	4,927,385원	12,443원	-425,626원
계	774	31,857,973원		938	28,556,491원		-3,301,482원

다. 보상금 납입 유형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의 납입 유형은 기관납과 이용자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6〉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 지불 주체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납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지불 주체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납입현황

(2010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지불 주체		납부 총액
	기관납 금액	이용자납 금액	
국립중앙도서관	-	2,690,197원	2,690,197원
국회도서관	-	11,543,780원	11,543,780원
공공도서관	1,176,130원	1,252,082원	2,428,212원
대학도서관	4,048,498원	2,918,419원	6,966,917원
전문도서관	4,727,684원	199,701원	4,927,385원
계	9,952,312원	18,604,179원	28,556,491원

〈표 6〉에서 살펴보면, 납부액 총액 중 이용자납의 총 금액 비율은 66.5%로 기관납의 총 금액 비율 33.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기관납이 이용자납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라. 미분배 보상금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 공탁제도가 폐지되고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의 발전 기금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징수된 미분배 보상금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Ⅲ. 연구 설계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보상금 약정체결 및 보상금 납부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의 내용은 6개 범주로 구분하고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6개 범주 내의 각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한 2개 문항
- ②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4개 문항
- ③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5개 문항
- ④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징수 및 분배의 합리성 평가에 대한 6개 문항
- ⑤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정착 및 개선 요구도에 대한 4개 문항

⑥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요소들에 대한 4개 문항

〈표 7〉은 이와 같은 본 설문지의 설계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에 대한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문항 수	응답집단
1.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일반사항	보상금제도에 대한 사전 인식	2	저자·사서 공통
	보상금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보상금제도의 필요성	4	저자·사서 공통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여부		
	원문DB 구축의 촉진 여부		
3.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원문DB의 원활한 이용 도모	5	저자·사서 공통
	단행본 1면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의 적정성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의 적정성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 단행본 1파일 당 보상금(20원)의 적정성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 정기간행물 1파일 당 보상금(20원)의 적정성		
현행 보상금의 저작권자 경제적 이익 보존의 적절성			
4.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징수 및 분배의 합리성	이용자가 내는 보상금 납부에 대한 합리성	6	사서  저자(보상금을 받은 저자)
	보상금 납부 절차의 간편성		
	보상금 납부 유형		
	2010년도 보상금 납부 총액		
	보상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서술형)		
보상금 납부의 투명성			
5.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및 개선 요구도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4	저자·사서 공통
	현행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인식		
	안방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정도		
	보상금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서술형)		
6. 인구통계	성별, 신분, 연령, 학력	4	저자·사서 공통
	계	25	

본 설문지의 각 문항은 연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부대학교도서관의 담당사서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담당자, 그리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과 내 교수와의 심층면담, 전화상담,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한 사전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보상금제도의 효용성 평가를 위하여 공통으로

문는 문항과 분리하여 문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분을 문는 문항의 경우 저자집단은 보상금을 분배받은 저자집단과 문헌정보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저자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사서집단은 공공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포함),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국회도서관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의 효용성에 대한 측정은 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5로, “그렇다”는 4로, “보통이다”는 3으로, “그렇지 않다”는 2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로 코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분석과 아울러 조사대상자 중 보상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와 현행 보상금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저자집단과 사서집단으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은 보상금제도의 문제점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는데 참고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권리자 집단과 사서집단을 대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서집단의 조사대상자는 설문 조사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보상금 약정을 체결한 해당 도서관에서 보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자집단은 다시 보상금을 분배받은 경험이 있는 저자집단과 보상금을 분배받은 경험은 없지만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집단 중 보상금을 분배받은 경험이 있는 저자의 경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보상금 분배자 리스트에 기록된 저자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여타 분야의 저자들보다 이해도가 높아 응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은 저자에게 설문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그 조사대상자가 적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응답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저자집단에 신탁관리단체와 출판사도 포함시켜 조사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본 제도에 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신도 매우 저조해 20명 정도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그쳐 이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이용자도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용자와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보상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본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은 보상금을 분배받은 경험이 있는 저자의 경우 전화번호가 분배자 명단에 나타난 경우 전화를 걸어 본 설문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해당 저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저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과 사서들로부터의 데이터 수집도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이메일로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화 연결이 된 경우에는 본 설문 분석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설문 요청을 부탁하였고, 회수율을 높이고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도 설문조사 요청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12일에서 8월 5일까지 총 25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총 310명의 응답데이터를 분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문헌정보학과 교수 173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10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신 받아 61.7%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보상을 받은 저자는 협회로부터 받은 리스트에서 이메일이 명기되어 있는 147명의 저자에게 설문지를 보내었는데, 반송된 28개를 제외한 119개의 설문지 중 23개가 회신되어 19.3%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약정을 체결한 도서관 847개 도서관의 사서들로부터는 170개가 반송되어 돌아왔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총 677개에서 184개(데이터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12개의 설문지 제외)의 설문지가 회신되어 27.2%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 3. 분석 방법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의해 회수된 데이터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금제도에 관한 사전지식 및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서집단과 저자집단 간의 보상금제도의 효용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저자집단의 신분 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의 효용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서집단의 신분 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의 효용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사서집단의 보상금 납부유형 및 2010년도 보상금 납부총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사서집단만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이용자가 내는 것의 합리성과 보상금 납부 절차의 간편성을 파악하고, 보상금을 받은 저자만을 대상으로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 IV.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분석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신분, 연령, 학력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		저자집단		사서집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7	44.2	81	63.3	56	30.8
	여		169	54.5	47	36.7	122	67.0
	무응답		4	1.3	-	-	4	2.2
신분	저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103	33.2	103	80.5	-	-
		보상금을 받은 저자	23	7.4	23	18.0	-	-
	사서	공공도서관	40	12.9	-	-	40	22.0
		대학도서관	69	22.3	-	-	69	37.9
		전문도서관	72	23.2	-	-	72	39.6
	무응답		3	1.0	2	1.6	1	0.5
연령	20대		13	4.2	-	-	12	6.6
	30대		88	28.4	8	6.3	81	44.5
	40대		116	37.4	47	36.7	69	37.9
	50대		75	24.2	58	45.3	17	9.3
	60대 이상		14	4.5	14	10.9	0	0.0
	무응답		4	1.3	1	0.8	3	1.6
학력	고졸		2	0.6	-	-	1	0.5
	전문대졸		12	3.9	-	-	12	6.6
	대졸		114	36.8	1	0.8	114	62.6
	대학원졸		175	56.5	126	98.4	49	26.9
	기타		1	0.3	1	0.8	-	-
	무응답		6	1.9	-	-	6	3.3
전체			310	100.0	128	100.0	182	100.0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310명에 대한 성별분포는 남성 137명(44.2%), 여성 169명(54.5%)으로 여성이 32명(10.3%) 더 많았다. 이 문항에 대하여 사서집단의 4명(1.3%)이 무응답하였다.

신분별로는 저자집단 중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03명(33.2%),<sup>11)</sup> 보상금을 받은 저자는 23명

11) 문헌정보학과 교수 중 2명은 신분을 묻는 문항에 표시를 하지 않았음. 이는 자신이 저자이자 이용자라고 생각하

(7.4%)으로 보상을 받은 저자가 현격히 적었다. 그 이유는 설문지 발송과 관련해서 전화상담과 설문지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보상금 분배자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저자 중 많은 분들이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몇 년 전 약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의 소액의 보상을 받았을 뿐 최근에는 전혀 받지 못했다<sup>2)</sup>고 응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더 시간을 갖고서 반응되거나 연락이 안 된 분들로부터 응답을 받아 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서집단으로는 전문도서관 72명(23.2%), 대학도서관 69명(22.3%), 공공도서관 40명(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3명(1.0%)이 무응답 하였다. 연령은 40대가 116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8명(28.4%), 50대가 75명(24.2%), 60대 이상이 14명(4.5%), 무응답 4명(1.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주로 대학원졸이 175명(56.5%)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저자집단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교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졸 114명(36.8%), 전문대졸 12명(3.9%), 고졸 2명(0.6%), 기타 1명(0.3%), 그리고 무응답 6명(1.9%)으로 나타났다.

182명이 응답한 사서집단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성별은 남성이 56명(30.8%), 여성 122명(67.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12명(6.6%), 30대 81명(44.5%), 40대 69명(37.9%), 50대 17명(9.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명(0.5%), 전문대졸 12명(6.6%), 대졸 114명(62.6%), 대학원졸 49명(26.9%)으로 나타났다.

128명이 응답한 저자집단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성별은 남성이 81명(63.3%), 여성 47명(36.7%)으로 나타났다. 저자연령은 50대가 58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7명(36.7%), 60대 이상 14명(10.9%), 30대 8명(6.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졸이 126명(98.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1명(0.8%), 기타 1명(0.8%)으로 나타났다.

## 2. 보상금제도의 사전 인식 및 이해 정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신분)에 따른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제도에 대한 사전 인식과 그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보상금제도의 사전 인식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여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어 신분문항의 무응답으로 처리하였음.

12) 2008년 이후에는 보상금이 단체에 집중됨으로써 개인 저자에게 돌아가는 분배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저자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

〈표 9〉 보상금제도에 대한 사전 인식 정도<sup>13)</sup>

변수	구분		사전 인식		전체	
			예	아니오		
성별	남		127(92.7)	10(7.3)	137(100.0)	$\chi^2 = 0.251$ $p = 0.617$
	여		154(91.1)	15(8.9)	169(100.0)	
신분	저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90(87.4)	13(12.6)	103(100.0)	$\chi^2 = 1.303$ $p = 0.254$
		보상금을 받은 저자	22(95.7)	1(4.3)	23(100.0)	
	사서	공공도서관	36(90.0)	4(10.0)	40(100.0)	$\chi^2 = 2.447$ $p = 0.294$
		대학도서관	67(97.1)	2(2.9)	69(100.0)	
		전문도서관	68(94.4)	4(5.6)	72(100.0)	
전체		284(91.6)	26(8.4)	310(100.0)		

\* p<0.05 \*\* p<0.01 \*\*\* p<0.001

〈표 9〉에서 보면 ‘예’ 284명(91.6%), ‘아니오’ 26명(8.4%)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성별과 신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일반적 특성과 관계없이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보상금제도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보상금제도의 이해 정도<sup>14)</sup>

변수	구분		이해 정도			전체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성별	남자		79(62.2)	36(28.3)	12(9.4)	127(100.0)	$\chi^2 = 3.869$ $p = 0.145$
	여자		97(63.0)	51(33.1)	6(3.9)	154(100.0)	
신분	저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60(66.7)	22(24.4)	8(8.9)	90(100.0)	$\chi^2 = 5.355$ $p = 0.069$
		보상금을 받은 저자	20(90.9)	2(9.1)	0(0.0)	22(100.0)	
	사서	공공도서관	17(47.2)	15(41.7)	4(11.1)	36(100.0)	$\chi^2 = 8.142$ $p = 0.087$
		대학도서관	33(49.3)	29(43.3)	5(7.5)	67(100.0)	
		전문도서관	47(69.1)	19(27.9)	2(2.9)	68(100.0)	
전체		177(62.3)	88(31.0)	19(6.7)	284(100.0)		

\* p<0.05 \*\* p<0.01 \*\*\* p<0.001

〈표 10〉에서 보면 ‘조금 알고 있다’ 177명(62.3%), ‘잘 알고 있다’ 88명(31.0%), ‘매우 잘 알고 있다’ 19명(6.7%) 순으로 나타났다.

13) 이 문항의 질문에 응답자 중 일반적 특성을 묻는 변수에 4명이 성별에, 3명이 신분에 무응답함.  
14) 이 문항의 질문에 응답자 중 일반적 특성을 묻는 변수에 3명이 성별에, 1명이 신분에 무응답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성별'과 '신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즉, 일반적 특성과 관계없이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차이 검증

문항 내용	전체	저자집단	사서집단	t값	유의 확률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보상금제도의 필요성	3.72(0.96)	3.76(1.06)	3.69(0.88)	-0.588	0.557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3.27(0.97)	3.22(1.04)	3.30(0.92)	0.694	0.488
원문DB 구축 촉진	3.01(0.97)	3.06(0.97)	2.98(0.98)	-0.757	0.450
원문DB 원활한 이용 도모	2.82(1.04)	2.83(0.98)	2.81(1.09)	-0.121	0.904

\*  $p<0.05$ , \*\*  $p<0.01$ , \*\*\*  $p<0.001$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는 필요하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 구축을 촉진한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문DB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4개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상금 자체의 타당성 평가를 묻는 문항 중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필요하다'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모두는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자들과 원문DB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로 하여금 이 제도가 저작권의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 구축을 촉진한다'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3.01로 나타났다. 현재 보상금제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원문DB의 구축이 촉진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의 보상금 적용대상 원문DB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두 기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사서선생님들과의 대화 중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회도서관 원문DB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현행 보상금제도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문DB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한다’에 대한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sup>15)</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보상금제도 적용 하에 다양한 원문DB가 구축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원문DB의 이용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주로 국회도서관의 원문DB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원문DB에 집중되어 있을 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문DB가 부족하다는 현실과, 참여·공유·개방의 웹2.0 시대에 원문DB의 이용을 도서관내의 별도의 IP가 할당된 PC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와 불편함, 그리고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의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서도 보상금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현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 저작물 복제·전송이용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차이 검증

문항 내용	전체	저자집단	사서집단	t값	유의 확률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단행본의 1면당 출력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의 저렴성	3.29(0.92)	3.21(1.01)	3.35(0.84)	1.385	0.167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의 저렴성	3.27(0.91)	3.21(1.03)	3.31(0.82)	0.919	0.359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 받은 판매용 단행본 1파일 당 보상금(20원)의 저렴성	3.33(0.92)	3.48(1.00)	3.22(0.85)	-2.382	0.018*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 받은 판매용 정기간행물 1파일 당 보상금(20원)의 저렴성	3.30(0.94)	3.43(1.04)	3.21(0.86)	-1.954	0.052
현행 보상금의 저작권자 경제적 이익을 보전에의 적당성	2.58(0.86)	2.37(0.91)	2.73(0.79)	3.687	0.000***

\* p<0.05, \*\* p<0.01, \*\*\* p<0.001

15) 보상금을 기관에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보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할 가능성이 큼.

〈표 12〉에서 보면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의 단행본 1과일 당 보상금(20원)은 저렴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의 정기간행물 1과일 당 보상금(20원)은 저렴하다’, ‘단행본의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은 저렴하다’,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은 저렴하다’라는 3개의 질문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현행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는데 적당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 다.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및 개선 요구 수준 등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현행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인식 정도 및 제도적 개선의 요구도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 보상금제도의 정착 및 개선 요구 차이 검증

문항 내용	전체	저자집단	사서집단	t값	유의 확률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이용의 활성화 정도)	2.59(0.87)	2.13(0.66)	2.91(0.86)	9.029	0.000***
현행 보상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정도	3.38(0.88)	3.66(0.85)	3.18(0.84)	-4.812	0.000***
안방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수준	3.83(0.79)	3.84(0.80)	3.83(0.78)	-0.133	0.894

\* p<0.05, \*\* p<0.01, \*\*\* p<0.001

〈표 13〉에서 보면,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및 제도적 개선 요구를 분석한 결과, ‘현재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이용이 활발하다)’와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이용이 활발하다)’에 대하여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저자집단은 사서집단에 비해 보상금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에 대하여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서집단이 도입 초기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할 때, 사서집단의 평균이 저자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시간이 경과된 지금 도서관의 사서들은 변화 또는 문제점의 개선보다는 이 제도의 운영에 익숙해진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문D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들이 본 조사에 참여한 점도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보상금제도 수준을 넘어선 안방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평균은 3.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모두가 제도적 개선에 유사한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저자집단의 신분 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저자집단의 신분 변수 즉, 문헌정보학과 교수집단과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 간의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문헌정보학과 교수집단과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 간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문항 내용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보상금제도의 필요성	전체	3.76	1.06	-5.356	0.000***
		문헌정보학과 교수	3.59	1.07		
		보상금을 받은 저자	4.52	0.67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전체	3.22	1.04	0.739	0.462
		문헌정보학과 교수	3.26	1.04		
		보상금을 받은 저자	3.09	1.04		
	원문DB 구축 촉진	전체	3.06	0.97	-2.048	0.043*
		문헌정보학과 교수	2.97	0.97		
		보상금을 받은 저자	3.43	0.90		
	원문DB 원활한 이용 도모	전체	2.83	0.98	-2.799	0.007**
		문헌정보학과 교수	2.74	1.01		
		보상금을 받은 저자	3.22	0.67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단행본 1면당 출력 보상금의 저렴 정도	전체	3.21	1.01	-2.486	0.014*
		문헌정보학과 교수	3.10	0.98		
		보상금을 받은 저자	3.68	1.09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 보상금의 저렴 정도	전체	3.21	1.03	-2.690	0.008**
		문헌정보학과 교수	3.09	1.02		
		보상금을 받은 저자	3.73	0.98		

문항 내용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전송받은 판매용 단행본 1파일 당 보상금 저렴 정도	전체	3.48	1.00	-2.522	0.013*
		문헌정보학과 교수	3.37	0.99		
		보상금을 받은 저자	3.95	0.95		
	전송받은 판매용 정기간행물 1파일 당 보상금 저렴 정도	전체	3.43	1.04	-3.312	0.002**
		문헌정보학과 교수	3.30	1.05		
		보상금을 받은 저자	4.00	0.84		
	현행 보상금의 저작권자 경제적 이익 보존의 적정성	전체	2.37	0.91	2.957	0.004**
		문헌정보학과 교수	2.48	0.86		
		보상금을 받은 저자	1.86	0.99		
보상금제도의 개선 요구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전체	2.13	0.66	0.329	0.743
		문헌정보학과 교수	2.14	0.60		
		보상금을 받은 저자	2.09	0.90		
	현행 보상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정도	전체	3.66	0.85	-0.802	0.424
		문헌정보학과 교수	3.62	0.86		
		보상금을 받은 저자	3.78	0.85		
	안방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수준	전체	3.84	0.80	0.950	0.344
		문헌정보학과 교수	3.87	0.80		
		보상금을 받은 저자	3.70	0.82		

\* p<0.05, \*\* p<0.01, \*\*\* p<0.001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4개의 질문 중 3개 질문 즉, ‘도서관의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필요하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 구축을 촉진한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문DB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한다’에 대하여 문헌정보학과 교수집단과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3개 질문에서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의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5개 질문은 모두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의 5개 질문 중 4개 질문 즉, ‘단행본의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은 저렴하다’,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은 저렴하다’,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의 단행본 1파일당 보상금(20원)은 저렴하다’,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의 정기간행물 1파일당 보상금(20원)은 저렴하다’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는데 적당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금을 받은 저자들은 현행 보상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학술원문DB의 가격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6)</sup>

또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타보상금의 책정 경우 최소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도서관에 적용되는 보상금액은 보상금제도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낮은 보상금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현행 보상금의 분배 방식을 따르면, 그 분배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11년 현재 개인 저자들이 보상금을 분배 받으려면 분배 최소금액인 만 원 이상(2008년 이전에는 최소금액이 3,000 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테면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자면, 33면의 논문이 102회 이상 출력되어야만 만 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33면(100면의 1/3) × 3원(1회 출력 보상금액) × 102회). 만약 현행의 이 방식을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및 앞으로도 개인저자들이 보상금을 받아 경제적 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을 고려한다면 적정 보상금의 가격책정에 대한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복사전송권협회도 보다 많은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분배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행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 '보상금제도 수준을 넘어선 안방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라는 질문에 대해 두 집단은 유사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부분에서 이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저자집단 중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의 표본 수는 적다. 때문에 통계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면에서 볼 때 조금 부족한 모수집단(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 수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5. 사서집단의 신분 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 차이 검증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저자집단의 신분 변수 즉,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는데, 그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16) 시중의 학술원문DB업체의 가격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금액
5페이지 미만	1,000원
5페이지 ~ 10페이지	2,000원
10페이지 이상 ~ 100페이지 미만	(전체 페이지수 - 10페이지 × 80DNJS) + 2,000원
100페이지 ~ 200페이지 미만	12,000원
200페이지 이상	15,000원

〈표 15〉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집단 간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 차이 검증

분항 내용		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	보상금제도의 필요성	전체	3.69	0.88	6.687	0.002**
		공공도서관	4.00 <sup>a</sup>	0.82		
		대학도서관	3.41 <sup>b</sup>	0.98		
		전문도서관	3.79 <sup>ab</sup>	0.75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전체	3.30	0.92	10.703	0.000***
		공공도서관	3.68 <sup>a</sup>	0.80		
		대학도서관	2.93 <sup>b</sup>	0.97		
		전문도서관	3.43 <sup>a</sup>	0.82		
	원문DB 구축촉진	전체	2.98	0.98	5.538	0.005**
		공공도서관	3.25 <sup>a</sup>	0.95		
		대학도서관	2.68 <sup>b</sup>	0.93		
		전문도서관	3.11 <sup>ab</sup>	0.97		
원문DB 원활한 이용 도모	전체	2.81	1.09	6.307	0.002**	
	공공도서관	3.18 <sup>a</sup>	1.11			
	대학도서관	2.47 <sup>b</sup>	1.01			
	전문도서관	2.93 <sup>ab</sup>	1.08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	단행본 1면당 출력 보상금의 저렴 정도	전체	3.35	0.84	8.376	0.000***
		공공도서관	3.63 <sup>a</sup>	0.67		
		대학도서관	3.04 <sup>b</sup>	0.92		
		전문도서관	3.50 <sup>a</sup>	0.77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 보상금의 저렴 정도	전체	3.31	0.82	3.833	0.023*
		공공도서관	3.50 <sup>a</sup>	0.72		
		대학도서관	3.10 <sup>b</sup>	0.88		
		전문도서관	3.40 <sup>ab</sup>	0.80		
	전송받은 판매용 단행본 1파일 당 보상금 저렴 정도	전체	3.22	0.85	1.724	0.181
		공공도서관	3.30	0.88		
		대학도서관	3.07	0.83		
		전문도서관	3.32	0.84		
전송받은 판매용 정기간행물 1파일 당 보상금 저렴 정도	전체	3.21	0.86	1.560	0.213	
	공공도서관	3.34	0.88			
	대학도서관	3.07	0.81			
	전문도서관	3.28	0.89			
현행 보상금의 저작권자 경제적 이익 보존의 적정성	전체	2.73	0.79	2.806	0.063	
	공공도서관	2.95	0.68			
	대학도서관	2.58	0.88			
	전문도서관	2.74	0.75			
보상금제도의 개선 요구	전체	2.91	0.86	3.743	0.026*	
	공공도서관	2.82 <sup>ab</sup>	0.85			
	대학도서관	2.75 <sup>b</sup>	0.78			
	전문도서관	3.13 <sup>a</sup>	0.90			

문항 내용		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보상금제도의 개선 요구	현행 보상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정도	전체	3.18	0.84	7.420	0.001**
		공공도서관	3.00 <sup>b</sup>	0.69		
		대학도서관	3.48 <sup>a</sup>	0.91		
		전문도서관	2.99 <sup>b</sup>	0.78		
	안방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수준	전체	3.83	0.78	0.807	0.448
		공공도서관	3.90 <sup>a</sup>	0.75		
대학도서관		3.88 <sup>b</sup>	0.86			
		전문도서관	3.74 <sup>b</sup>	0.73		

\* p<0.05, \*\* p<0.01, \*\*\* p<0.001

〈표 15〉에서 보면,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4개의 질문 모두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질문에서 모두 공공도서관 사서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도서관 사서집단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도서관이 보상금제도 실시 초부터 타도서관에 비하여 강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5개 질문 중 2개 질문 즉, '단행본의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은 저렴하다'와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 보상금(판매용 5원, 비매용 3원)은 저렴하다'에 대하여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공공도서관 사서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도서관 사서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사서집단의 이러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학위논문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졸업논문 제출 시 학위논문작성자에게 무상이용, 관외배포를 내용으로 하는 학위논문이용허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KERIS는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3년에 개발한 dCollection을 통하여 수집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을 지향하여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 발표되는 학위논문은 보상금 적용대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복제전송권협회는 보상금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학위논문 작성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이용허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대표적인 비영리 학술매체인 학위논문의 오픈액세스 지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학술지 논문은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상업적인 웹DB업체인 한국학술정보(주)나 누리미디어와의 유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관내의 이용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KISTI의 과학기술학회마을<sup>17)</sup>은 누구나 학술지 논문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며, NDSL<sup>18)</sup>을 통해 학술지 등의 원문을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셋째, 단행본의 경우 도서관이 주관하여 원문DB를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 리스크가 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 유료의 전자책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기관 내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점들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및 개선요구 수준 등을 평가하는 3개 질문 중 2개 질문 즉, '현재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이용이 활발하다)'와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에 대해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전문도서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도서관이 낮게 나타났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도서관이 낮게 나타났다.

## 6. 기타

### 가. 사서집단의 보상금 납부유형 및 2010년도 보상금 납부총액

기관의 보험금 납부 유형의 빈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사서집단의 보상금 납부유형 및 2010년도 보상금 납부총액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보상금 납부유형	기관납	133	73.1
	이용자납	40	22.0
	무응답	9	4.9
	전체	182	100.0
2010년도 보상금 납부총액	0원	9	4.9
	1만원 미만	82	45.1
	1만원 이상-2만원 이상	23	12.6
	2만원 이상-4만원 미만	23	12.6
	4만원-5만원 정도	16	8.8
	기타	20	11.0
	무응답	9	4.9
전체	182	100.0	

<표 16>에서 보면, '기관납'이 133명(73.1%)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납'이 40명(22.0%)으로 나타났다.

17) 과학기술학회마을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 [인용 2011. 8].

18) NDSL 홈페이지, <<http://schlor.ndsl.kr>> [인용 2011. 8].



기관의 2010년도 보상금 납부 총액의 빈도를 파악한 결과, '1만원 미만'이 82명(4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만원 이상~2만원 미만'과 '2만원 이상~4만원 미만'은 23명(12.6%), '4만원~5만원 정도'는 16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술형으로 응답받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0년 말과 2011년에 약정을 체결하여 아직 이용 실적이 적고 그 정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음
- 도서관 내 복사업체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 총액을 모름
- 보상금제도, 이용 방법 등을 잘 모르기 때문
- 이용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
- 웹상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내면 서까지 이용하는 것을 꺼림
- 청구액이 너무 적어 송금하지 못했음

그 내용 중 도서관 내 복사업체 사람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 정작 사서 자신은 잘 모른다는 응답과 보상금제도의 의미 및 이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한 응답은 현행 보상금제도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나. 보상금 징수 및 분배의 합리성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경우 보상금을 이용자가 내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보상금의 납부 절차가 간편한지를, 그리고 보상금을 받은 저자만을 대상으로 보상금의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보상금의 이용자 납부에 대한 합리성

구분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사서집단	보상금을 이용자가 내는 것의 합리성	3.68	0.92
	보상금 납부 절차의 간편성	3.24	0.94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	보상금의 분배의 투명성	2.35	1.03

<표 17>에서 보면, '이용자가 보상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에 대한 평균은 3.68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 자신이 보상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서들은 '보상금 납부 절차가 간편하다'에 대해

여는 3.24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상을 받은 저자집단에 한하여 '보상의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 평균이 2.35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보상을 받은 저자들이 자신의 저작물 이용상황(유/무상 모두 포함)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보다 상세하고 즉각적인 보상금 분배내역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에 관한 안내정보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현황 및 보상관계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sup>19)</sup>는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보상을 분배할 때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상세내역서를 함께 교부해 왔고 현재에도 교부하고 있지만, 2008년 이후로는 교부대상이 주로 단체(학회나 연구소 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 V. 결론 및 제언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에 도입된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7년이 경과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그 의미와 현행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보상금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는 현행 저작권법상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보상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의 제5항에서 제9항을 준용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한 도서관은 전체 체결대상도서관의 48.4%에 불과하였고, 1년 총 납부금액은 약 28,55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4%나 감소하였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1만 원 이하인 도서관이 45.1%로 가장 높았고, 아직까지 미분배 보상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의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저자집단과 사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집단은 문헌정보학과 교수집단과 보상을 받은 저자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사서집단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점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310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성별에서는 여성이 169명으로 더 많았

19) 이러한 내용은 보상을 받은 저자들이 응답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임.

다. 신분별에서는 저자집단 중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05명, 보상금을 받은 저자는 23명이었고, 사서집단 중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사서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별에서는 저자들은 대학원, 사서들은 주로 대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상금제도의 사전 인식 및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 91.6%는 보상금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해 정도에서는 조금 알고 있다가 62.3%로 가장 높았다.

셋째,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t-test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4개 질문에 대하여 저자집단과 사서집단 간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 '도서관의 복제·전송보상금제도는 필요하다'에 대하여는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을 위해서는 보상금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을 보여준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 구축을 촉진한다'에 대하여는 전체 평균이 3.01로 가까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넘었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구축된 다양한 원문DB가 부족하고, 도서관내에서의 별도의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과 불편함 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②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4개 질문 중 '타도서관으로부터 열람용으로 전송받은 판매용의 1파일 당 보상금은 저렴하다'와 '현행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는데 적당하다'에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는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③ 보상금제도의 정착정도 및 개선요구 수준 등에 대한 3개 질문 중 '현행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와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는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는 저자집단의 평균이 사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저자집단의 신분변수 즉, 문헌정보학과 교수집단과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4개 질문 중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보상금제도는 필요하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 구축을 촉진한다', '현행 보상금제도는 원문DB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한다'에 대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개 질문에서 보상금을 받은 저자집단의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 ②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5개 질문에 대하여는 두 집단 간의 평균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현행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는데 적당하다'에 대해 보상을 받은 저자집단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보상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학술원문DB의 가격에 비해 매우 낮고, 현행 보상의 분배방식 상 그 분배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보상금제도의 정착정도 및 개선요구 수준 등에 대한 3개 질문에 대하여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사서집단의 신분변수에 따른 보상금제도 효용성의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상금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4개의 질문 모두에서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사서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대학도서관 사서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 ② 보상금액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5개 질문 중 '단행본의 1면당 출력에 대한 보상은 저렴하다'와 '정기간행물 1면당 출력 보상은 저렴하다'의 2개 질문에 대하여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사서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대학도서관 사서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 ③ 보상금제도의 정착 정도 및 개선요구 수준 등을 평가하는 3개 질문 중 '현재 보상금제도는 정착되어 있다'와 '현행 보상금제도는 문제점이 있다'의 2개 질문에 대해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전문도서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대학도서관이 낮게 나타났다. 후자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의 평균이 가장 높게, 전문도서관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보상금 납부유형에서는 '기관납'이 73.1%로 높게 나타났고, '1만원 미만'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서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용자가 보상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의 평균은 3.68로 나타났고, '보상금 납부 절차가 간편하다'에 대하여는 3.24로 나타났다. 한편 보상을 받은 저자만이 응답하도록 한 '보상의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하여는 평균이 2.35로 나왔다.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의 보호와 적법한 이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를 하였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현행 보상금제도는 명목상 존재할 뿐 저작물의 권리와 도서관 및 이용자로부터 그 실효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빚어진 결과이겠지만, 다음의 6가지 요인으로 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의 낮은 약정체결율과 저작권자, 이용자 및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둘째, 콘텐츠의 부족. 즉,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원문DB가 구축되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국회원문DB서비스 정도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원문DB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저조한 이용.

넷째, 낮은 보상금액과 그 이용이 많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다섯째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미온적인 대처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 이를테면 대표적인 비영리저작물인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오픈액세스 강화와 전자책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또한 참여, 공유, 개방의 웹2.0 시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도서관 내에서의 별도의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제한성과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간편하고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여섯째, 매년 변동이 있는 저작권자·일반 국민(이용자) 및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점.

어쨌든 보상금을 조금 올리고, 보상금 이용현황의 확인 및 보상금관리시스템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일시적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행 보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현행 보상금제도의 수준을 넘어선 저작물의 안방서비스를 지향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